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-5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」 중 제6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에
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
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
- 나.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을
위한 조례안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선정된
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
(안 제6조 제1항 제11호)
- 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붙여 쓰기 되어 있는 조문에
띄어쓰기를 적용하고, 띄어쓰기 되어 있는 조문에는 붙여쓰기 적용
(안 제6조 제1항 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예산액 서울시 재정보전)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6. 12. 8. ~ 12. 28.(제출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○ 성별영향 분석평가 (개선할 사항 없음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

○ 부패영향 분석평가 (적정함)

제6조(수수료의 감면)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수수료 감면의 혜택은 혜택을 부여하는 요건, 대상, 절차, 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적정함.

【법무팀 의견】

- ▶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
“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
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
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

제6조제2항 중 “제9호”를 “제1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 <u>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	4. 「 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 <u>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	9. 「 <u>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
10. 삭제	10. 삭제
<신 설>	11. 「 <u>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의 지원에 관한 조례</u> 」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 목별 과세(납세)증명
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(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)에 한하며,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.	② ----- 제11호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